

의안 번호	제2757호~2758호
----------	--------------

2026. 7. 27.(월) 11:00
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심 사 보 고 서

안 건
총 2건: 개정조례안 2건



관 광 복 지 위 원 회

심 사 보 고 총 괄

I 심사대상 안건

- 의안번호 제2757호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- 의안번호 제2758호 : 법령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II 심 사 경 과

의안번호	제 출 일	제 출 자 (발 의 자)	회 부 일	상 정 일 (제1차 관복위)
제2757호	2026. 7. 6.	장 성 군 수 (기 획 실 장)	2026. 7. 7.	2026. 7. 15.
제2758호	2026. 7. 6.	장 성 군 수 (기 획 실 장)	2026. 7. 7.	2026. 7. 15.

III 심 사 결 과

안 건	심사결과
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	원안가결
법령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	원안가결

1. 심사경위

- 제출일자 : 2026. 7. 6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회부일자 : 2026. 7. 7.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6. 7. 15.(제379회 제1차 관광복지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○ 제안이유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. 7. 1. 출범함에 따라, 1차 개정(2026. 5. 14.)에 이어 누락 사항 및 추가 정비 필요 사항을 보완하고 단계적 개정을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역·직위 명칭 및 용어 변경사항 반영 등

종 전 명 칭	변 경 명 칭	종 전 명 칭	변 경 명 칭
전라남도	전남광주통합특별시	전라남도지사	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
광주광역시	전남광주통합특별시	광주광역시장	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
도 세	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	도 비	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“전라남도”, “전라남도지사” 등의 명칭을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,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” 등으로 변경하는 등 관계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,
- 개정내용은 대부분 행정구역 및 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, 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군민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으며,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시행에 맞추어 관계 조례를 일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- 근거법령 및 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회의록 비치)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. 심사경위

- 제출일자 : 2026. 7. 6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회부일자 : 2026. 7. 7.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6. 7. 15.(제379회 제1차 관광복지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○ 제안이유

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및 유관기관 명칭 등 용어·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과 규범 신뢰성 제고

○ 주요내용

○ 제1장 법령불부합 조항 정비

가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

* 주민등록번호 → 생년월일

나. 상위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미반영된 사항

*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이 「물환경보전법」으로 제명 변경

○ 제2장 조직개편 등을 반영한 유관기관 등 명칭정비

○ 세부 변경 내용 : 5건

장	조	소관부서	제명	개정대상
1장	1	인구경제실	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	별지 제2,3호서식
	2	지역개발과	장성군 도시계획 조례	제50조
	3	맑은물관리사업소	장성군 하수도 조례	제22조, 제25조
2장	4	재난안전과	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제3조
	5		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	제3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유관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관계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규범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개정내용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, 변경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는 한편, 조직개편에 따른 유관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근거법령 및 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회의록 비치)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